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0. 20 선고 2019가단15159 판결 [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(탈퇴)A 주식회사

원고승계참가인B 유한회사

피고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암(담당변호사 김정태, 도병수, 조광묵)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경석, 양동혁

변론 종결2021. 8. 18.

판결 선고2021. 10. 20.

주 문

1.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2/9 지분에 관하여 2018. 9. 24.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56,385,582원 한도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56,385,5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원고승계참가인의 D에 대한 채권

- 주식회사 E(이하 'E은행',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최초 언급 시 외에는 '주식회사' 기재 생략)은 D의 연대보증 아래 F 주식회사에 2004. 11. 24. 100,000,000원, 2005. 11. 25. 200,000,000원을 대출하였다.
- E은행은 2008. 10. 29.경 G 주식회사에 위 대출금 채권(연대보증 채권 포함)을 양도하였고, 그 무렵 채권양도 통지도 이루어졌다.
- G은 D를 상대로 하여 2010. 5. 3. 'D는 F과 연대하여 G에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. 5. 13.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%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내용의 지급명령(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30280호)을 받았고, 위 지급명령은 2010. 5. 27. 확정되었다.
- D에 대한 채권은 2010. 11. 1. 원고(변경 전 상호: H 주식회사)에게 양도되었다가,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. 8. 8. 원고승계참가인(이하 '승계참가인')에게 다시 양도되었으며, 각 채권양도 통지도 마쳐졌다.1) 2) 승계참가인은 2019. 10. 28.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 하였고, 원고는 피고의 승낙을 얻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.

나.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

-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)의 소유자이던 I은 2018. 9. 24. 사망하였다.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D, J, K이 있다.
-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1. 8. 피고 앞으로 2018. 9. 24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- 이 사건 부동산(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제외)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126,000,000원(2011. 11. 18. 143,000,000원으로 변경됨), 근저당권자 L조합(이하 'L')인 2009. 2. 27.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, 위 소유권이전등기 후인 2019. 1. 25. 말소되었다.
-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는 이 사건 부동산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~12호증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

가. 승계참가인

D가 위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채권자인 승계참가인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. 따라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56,385,582원[= 253,735,119원(= 이 사건 부동산 가액 343,907,000원 -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90,171,881원) × 2/9]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

I은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90,000,000원을 대출받아 D에게 증여하였는바,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피고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루어졌다.

결국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채권자를 해한다고 볼 수 없고, D나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,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.

3. 판단

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,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(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).

앞서 든 증거와 을 제1~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○ I은 L에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한도 90,000,000원인 대출계좌(L, (계좌번호 1 생략), 이하 'L 계좌')를 새로 개설하였다.

○ 위 대출거래 개시일인 2009. 2. 27. L 계좌에서 49,262,515원이 최초 출금되었는데, 그중 상당액은 D의 처인 M(개명 후 이름: N)에게 송금되었다. 이후로도 L 계좌와 M의 계좌 사이에서 다수의 입출금 거래가 이루어졌다.

○ D와 M은 L 계좌의 대출잔액이 한도액인 90,000,000원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긴 경우 일정액을 입금함으로써 대출잔액이 한도액 이하로 유지되게 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.3) ○ L 계좌를 이용한 입출금 거래는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여러 곳에서 이루어졌는데, 거래기록사항 란에는 'O', 'P' 등 건설업을 하는 D의 거래처로 보이는 이름들이 여럿 기재되어 있다. 한편 I은 보령시 Q 소재 농촌 지역에서 오래도록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고, L 계좌가 아닌 별도의 주거래 계좌(R조합, (계좌번호 2 생략))를 통하여 각종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공과금을 납부해온 것으로 보인다.

○ I이 사망한 2018. 9. 24.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302,651,100원이다.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새로 대출을 받아 2019. 1. 29.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90,171,881원을 변제하였다.

위 사실관계에 의하면, 피고 주장처럼 I은 L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D에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대출금 90,000,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. 그리고 상속개시 당시 D의 상속지분 가액은 67,255,800원(= 302,651,100원 × 2/9) 정도인데, D는 이미 이를 훨씬 넘는 90,000,000원을 받은 셈이 된다.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, 피고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D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다.

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승계참가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4. 결론

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
판사강화석

별지

1) D에 대한 채권이 원고나 승계참가인에게 순차로 양도된 바 없다거나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바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.

2) 한편 피고는 D에 대한 채권 중 위 2004. 11. 24.자 대출금 100,000,000원에 대한 연대보증

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. 그러나 위 채권은 2005. 11. 22. 변제기가 2006. 11. 22.로 연장되었고(갑 제8호증의 1), G은 연장된 변제기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위 지급명령을 신청·발령받아 확정되었으며, 승계참가인은 위 확정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D를 상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(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50619호)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,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.

3) D의 경우: 2011. 3. 21.자 867,000원, 2011. 6. 8.자 6,640,280원, 2011. 8. 26.자 3,414,700원, 2011. 9. 16.자 5,000,000원, 2011. 10. 21.자 3,000,000원 등

M의 경우: 2009. 4. 10.자 9,000,000원, 2009. 8. 24.자 20,000,000원, 2009. 12. 30.자 3,200,000원 등